



대 구 지 방 법 원

제 1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5고합720 유사장간
피 고 인 A
검 사 권예리(기소), 윤재희(공판)
변 호 인 변호사 김현익(국선)
판 결 선 고 2026. 7. 7.

주 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피고인에 대하여 40시간의 성폭력 치료강의 수강을 명한다.

이 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B(여, 19세)과 고등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낸 친구 사이이다.
피고인은 2025. 4. 26. 01:00경부터 03:00경까지 사이에 대구 중구 C모텔' D호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시고 피해자와 나란히 침대에 누워 영화를 보던 중, 피해자가



거부 의사를 밝힘에도 불구하고 갑자기 손으로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피해자의 바지 안으로 손을 넣고 피해자의 음부에 손가락을 집어넣었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진술서, 112신고처리표

1. 성폭력 피해자 진료기록

1. 대구과학수사연구소 감정결과회보서

1. CCTV 영상 CD, 전화녹음 CD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97조의2

1. 정상참작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6조 제2항 본문

1. 공개명령, 고지명령 및 취업제한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7조 제1항, 제49조 제1항,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49조 제1항 단서, 제50조 제1항 단서,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부칙(제20931호, 2025. 4. 22.) 제4조,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단서, 장애인복지법 부칙(2025. 4. 1.) 제2조, 장애인복지법 제59조의3 제1항 단서

[피고인에게는 성폭력 범죄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이 법원이 정한 형과 수감명령, 신상정보 등록만으로도 피고인의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에 대한 공개·고지명령 또는 취업제한명령에 의하여 기대되는 이익 내지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과 부작용 등을 포함하여 기록에 나타난 제반의 사정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에게는 그 신상정보를 공개·고지하거나 취업제한을 하여서는 아니 될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판단한다.]

양형의 이유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01. 일반적 기준 > 가. 강간죄(13세 이상 대상) > [제1유형]

일반강간

[특별양형인자] 감경요소: 처벌불원

[권고영역 및 권고형의 범위] 감경영역, 징역 1년~2년(성년 유사강간은 1유형에 포

섭하되, 형량범위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3. 선고형의 결정

이 사건 범행은 친구인 피해자의 가슴을 수회 만지고, 음부에 손가락을 넣은 사안으로 피고인의 죄책이 가볍지 않다. 피해자가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해 느낀 성적 불쾌감과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피고인이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법원에 이르기까지 일관되게 자신의 범행을 인



정하고 있다.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피해 경험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고통을 덜 수 있었다. 피해자가 피고인과 합의하여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 형사처벌 받은 전력이 없다.

위와 같은 정상들과 피고인의 나이, 성행, 환경, 가족관계,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이 사건 기록과 변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 요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이번에 한하여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신상정보의 등록 및 제출의무

판시 범죄사실에 대하여 유죄판결이 확정되는 경우 피고인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2조 제1항에 의하여 신상정보 등록대상자에 해당하게 되므로, 같은 법 제43조에 따라 관할기관에 신상정보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

재판장 판사 채희인 _____

 판사 김아름 _____

 판사 김상훈 _____